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중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등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 ----- ----- --.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u><삭 제></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81